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40

1980.03.01.제정	1981.03.01.개정	1982.03.01.개정	1983.11.21.개정	1984.03.01.개정
1984.08.17.개정	1985.01.17.개정	1985.03.01.개정	1985.12.06.개정	1987.03.01.개정
1988.03.01.개정	1989.03.01.개정	1989.04.29.개정	1990.05.03.개정	1991.03.01.개정
1992.03.01.개정	1993.03.01.개정	1993.08.10.개정	1994.03.01.개정	1994.03.06.개정
1995.06.07.개정	1996.03.01.개정	1996.08.24.개정	1997.03.24.개정	1997.08.14.개정
1997.11.18.개정	1998.03.01.개정	1998.05.11.개정	1998.11.19.개정	1999.05.01.개정
1999.11.15.개정	2000.03.01.개정	2000.11.02.개정	2001.03.01.개정	2001.10.29.개정
2002.10.10.개정	2003.03.01.개정	2003.10.01.개정	2004.03.01.개정	2004.04.16.개정
2004.06.16.개정	2005.03.01.개정	2006.03.01.개정	2006.09.07.개정	2007.03.01.개정
2008.03.01.개정	2008.05.20.개정	2008.06.02.개정	2009.03.01.개정	2010.03.01.개정
2010.07.30.개정	2010.12.02.개정	2011.03.01.개정	2011.08.22.개정	2011.09.01.개정
2011.11.17.개정	2011.12.01.개정	2012.02.10.개정	2012.03.01.개정	2012.05.25.개정
2012.08.17.개정	2013.03.01.개정	2013.06.01.개정	2014.01.09.개정	2014.04.21.개정
2014.07.01.개정	2014.09.15.개정	2015.02.01.개정	2015.02.23.개정	2015.03.01.개정
2015.03.25.개정	2015.05.28.개정	2015.06.18.개정	2015.07.13.개정	2016.03.01.개정
2016.05.01.개정	2016.09.01.개정	2016.09.27.개정	2016.11.01.개정	2016.12.01.개정
2017.03.01.개정	2017.04.07.개정	2017.09.01.개정	2018.01.31.개정	2018.04.17.개정
2018.10.24.개정	2019.02.14.개정	2019.04.09.개정	2019.07.16.개정	2019.11.27.개정
2020.03.18.개정	2020.04.21 개정	2020.03.01.개정	2020.09.25.개정	2021.01.25.개정
2021.04.08.개정	2021.05.21.개정	2021.10.21.개정	2022.04.15.개정	2022.06.10.개정
2022.12.20.개정	2023.02.28.개정			

소관부서 : 기획실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4.>

제2조(교육목적) 열린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본교는 각 분야의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1.>

제3조(명칭) 본교는 부산경상대학교(釜山經商大學校)라 한다.<개정 2011.11.24.>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40

**제4조(위치)** 본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연산8동 277-4번지)에 둔다.<개정 2014.01.09.>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교에 두는 학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 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09.29., 2012.11.01., 2014.01.09., 2015.02.13., 2015.03.25., 2015.05.28., 2015.07.13., 2016.05.01., 2017.04.07., 2018.04.17., 2019.04.09., 2020.04.21., 2021.04.08., 2021.05.21., 2021.10.21., 2022.04.15., 2022.06.10.>

학과명	입학정원		원	ਨੌੀ ਹੀ ਸੀ	입학정원		
443	주간	야간	계	학과명	주간	야간	계
경영과	30	30	60	스포츠레저과	60		60
경찰경호탐정과	25	20	45	유아교육과(3년제)	40		40
관광일어과	35		35	첨단미디어콘텐츠과	40		40
디지인과	65		65	생활문화과	30		30
반려동물보건과	30		30	컴퓨터정보·메타버스게임과 (3년제)	40		40
반려동물산업과	70		70	스마트물류무역과	25		25
부동산과	20	25	45	항공관광영어과	40		40
뷰티스타일과	65		65	호텔의료관광과	30		30
사회복지아동보육과	65	35	100	실버케어보건과	30		30
세무회계과	25		25	웹툰 애니메이션과	25		25
소방행정·안전관리과	40	20	60	디지털 크리에이터과	20		20
스마트팜도시농업과		25	25	디지털 공공서비스과	25		25
		합계			875	155	1,030

제5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 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06.10., 2012.11.01., 2014.01.09., 2018.01.31., 2018.10.24., 2022.04.15.>

ਨੀ ਹੀ ਸੀ	입학정원				
학 과 명	주간	야간	계		
경영학과	_	25	25		
부동산경영학과	-	25	25		
사회복지행정학과	-	25	25		
유아교육학과	-	20	20		
총계	_	95	95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40

## 제 2 장 직 제

- 제6조(교직원) ① 본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02.10., 2012.05.25., 2013.10.28.>
  -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12.05.25.>
  -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2013.10.28.>
    - 1. 겸임교원 :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 2. 초빙교원: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 3. 강사: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 **제6조의2(비전임교원)** 학칙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겸임교원 등의 비전임교 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4.01.09., 개정 2021.10.21.>
- 제6조의3(강사)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07.16.>
  -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적용한 관련 규정만적용한다. <신설 2019.07.16.>
  - ③ 강사의 인사, 재임용, 복무, 교수시간 등의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항 신설 2020.09.25>
-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개정 2012.02.10., 2012.05.25.>
  -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⑤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으며, 신규 임용 또는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교원으로 지정한다.<항 신설 2012.02.10.>
  - ⑥ 강사는 수업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9.07.16.>

제7조의2(교원 재임용 심사) ① 본교 전임교원의 임용기간 또는 근무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4/40

- 그 기간의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하여 재임용·재계약 여부는 규정으로 따로 정한 다. <개정 2016.09.01.. 2021.10.21.>
-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4. 교내 · 외 봉사에 관한 사항
- 5. 소속학과 입시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09.01.>
- 6. 취업지도 및 취업실적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09.01.>
- ② <항 신설 2012.08.17.> 삭제 <2016.09.01.>
- ③ 재임용·재계약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2.05.25., 항 번호 수 정 2012.08.17.>
- **제7조의3(교원 승진 심사)** 본교 교원의 승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2.08.17., 개정 2021.10.21.>
- **제8조(조직)** ① 본교에는 교무처, 기획실, 입시홍보실, 산학처, 평생학습처 및 사무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 <항 개정 2012.08.17., 2014.01.09., 2016.03.01., 2019.12.01., 2020.09.25.>
  - ②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재학연한) 본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4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2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하되, 1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이전에 개강할 수 있다. 단,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한 경우 4주 이내로 개강을 연기할 수 있다. <항 개정 2020.09.25.>
  -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5/40

- 3. 삭제 <2004.06.16.>
- 4. 총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호 개정 2020.09.25.>
-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 또는 계절학기 및 현장학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항 개정 2017.03.01., 2020.09.25.>
-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정공휴일
  - 2. 일요일
  - 3. 삭제 <2016.09.01.>
  - 4. 근로자의 날 <신설 2019.07.16.>
  -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1.>
  -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제 5 장 신입학

- 제16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해당학 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 제17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제18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19조(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6.03.01.>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ヹ	]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6/40

- 제19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2021.10.21.>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5.03.25.>
- 제20조(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 회를 둔다.
  - ②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1.>
- 제21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은 입시홍보실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며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1.>

제22조(입학허가) 입학은 입학전형절차 완료 후 총장이 허가한다.<개정2021.10.21.> 제23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 제24조(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운영 등) 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 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21.10.21.>
  - ④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항 신설2022.12.20.>

## 제 6 장 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 제25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졸업자(단, 전문대학 제적 및 자퇴 후 1년 경과자 가능) 및 대학 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있다.<개정 2011.08.22., 2019.02.14., 2021.10.21.>
  -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1.>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7/40

- 제26조(재입학) ① 본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처벌)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1.>
- 제27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2학년 1학기 초, 2학년 2학기 초(2년제 제외)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휴학 중 폐과로 인한 경우는 전과 가능학기를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01.. 2017.03.01.>
  - 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10., 2019.07.16., 2021.10.21.>
  - ③ 삭제 <2021.10.21.>
  - ④ 삭제 <2021.10.21.>
  - ⑤ 삭제 <2021.10.21.>

## 제 7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28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4.04.21., 2019.07.16., 2021.10.21.>
  - ②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01., 2019.07.16., 2021.10. 21.>
  - ③ 삭제 <2021.10.21.>
  - ④ 삭제 <2021.10.21.>
  - ⑤ 삭제 <2021.10.21.>
  - ⑥ 삭제 <2021.10.21.>
  - ⑦ 삭제 <2021.10.21.>
  - ⑧ 삭제 <2021.10.21.>
- 제29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한다.
  -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③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2021.10.21.>
- 제30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 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16.>
  -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제31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8/40

- 1. 삭제 <2021.10.21.>
- 2. 삭제 <2018.10.24.>
- 3. 삭제 <2021.10.21.>
- 4. 삭제 <2021.10.21.>
- 5. 삭제 <2021.10.21.>
- ② 제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2021.10.21.>

## 제 8 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전공 교육과정, 교양 교육과정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21.10.21.>

- ② 각 학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은 학과 교육과정개발위원회와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개발·개편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6.03.01.. 2017.09.01.. 2019.11.27.>
- ③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개발·개편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1.>
- ④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호 변경 2021.10.21)
- ⑤ 사회맞춤형교육에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03.01.>
- ⑥ KS-전공직무별 트랙교육과정과 KS-전공직무별 융합교육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09.25.. 개정.2021.10.21.>
- 제33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1학기 15시간에서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 ② 학점이수 및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u>.</u><개정 2016.11.01, 2019.02.14.. 2021.10.21.>
  - ③ 삭제 <2021.10.21.>
  - ④ 삭제 <2021.10.21.>
- 제34조(학점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1.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이라 한다)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 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9/40

- ②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2021.10.21.>
- ③ 삭제 <2021.10.21.>
- ④ 삭제 <2021.10.21.>
- 제35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온라인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②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 ③ 수업시간표는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 ④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따로 정하고  $06:00\sim23:50$ 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개시 시간은 산업체의 근무시 간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6.03.01. ,2021.10.21.>
  - ⑤ 사회맞춤형교육에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03.01.>
  - ⑥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위기경보 단계 발령으로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총장은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2021.10.21.>
- 제36조(집중수업) 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사회맞춤형교육에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03.01.>
- 제37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원의 구체적인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2.10., 2021.10.21>
- 제38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수업, 방송·통신수업 등 원격 교육, 기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21.10.21.>
- 제40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조기취업(현장실습)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2016.09.27.>
  -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0/40

## 제 9 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41조(시험)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2021.10.21.>
  - ② 삭제 <2021.10.21.>
  - ③ 삭제 <2021.10.21.>
- 제42조(추가시험) ① 조기취업(현장실습),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교무처의 허가를 얻은 후,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6.09.27., 2021.10.21.>
  - ②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3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교과목은 출석사항, 평소 학업 성적, 과제 및 서술형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2.10., 2016.03.01.,2021.10.21.>
  - ② 해당 교과목 성적이 D등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은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 ④ 수강신청을 하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등급)으로 처리한다.
  - ⑤ 평가시험지 보관은 해당학기 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담당교수가 교학 처로 제출하고 보존기간은 문서관리 규정(BSKS-3-1-57)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1.06.10., 2019.02.14.>
  - ⑥ 삭제 <2021.10.21.>
  - ⑦ 삭제 <2021.10.21.>
- 제44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 2. 매학기 24학점, 계절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 3. 출석미달 교과목의 성적
  - 4. 삭제 <2004.06.16.>
- 제45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점평균 1.20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01., 2021.10.21.>
- **제46조(졸업)**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11.06.10., 2021.10.21.>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70학점(3학년제 과정 108학점)으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1/40

로 하며,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개정 2011.06.10.,2016.11.01., 2017.03.01., 2019.02.14., 2021.10.21., 2023.02.28.>
- ③ 기타 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1.>
- 제47조(후기졸업)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46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1. 졸업학점 및 전공학점 미달자<개정2021.10.21.>
  - 2. 전공필수 교과목 또는 현장실습 의무학과의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② 삭제 <2004.04.16.>
- **제48조(학위수여)** ① 본교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1'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1.06.10.. 2012.11.01.>
  - ② 1997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2"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2012.11.01.>
- 제49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별지3"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2019.02.14.>
  - 2. 2학년 수료: 70학점 이상<개정 2016.11.01., 2019.02.14., 2023.02.28.>
  - 3. 3학년 수료: 108학점 이상<개정 2011.06.10.,2016.11.01, 2019.02.14.>
  - 4. 삭제 <2019.02.14.>

## 제 10 장 평생교육 및 장애학생<개정 2011.06.10.>

- 제50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대학,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 ②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1조(공개강좌) ① 본교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2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50조의 2 및 동 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한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6.10.>
  -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한다.<개정 2013.12.31.>
  - ③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 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6.10., 2021.10.21.>
- 제53조(시간제등록) ① 본교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2/40

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 취득 가능 학점의 범위,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2.02.10., 2021.10.21>
- ③ 삭제 <2021.10.21.>
- ④ 삭제 <2021.10.21.>
- 제54조(학점은행제) ① 본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140학점(3년제 과정 120학점, 2년제 과정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교에서 84학점(3년제 과정 65학점, 2년제 과정 48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1-3'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01.31.>
  -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항 변경 2021.10.21.>
- 제55조(비정규 특별과정) ① 본교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 ③ 비정규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21.10.21.>
- 제55조의2(장애학생) 본교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대학생활과 학업에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다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조 신설 2011.06.10.>

## 제 11 장 학생활동

- 제56조(학생자치기구) ① 본교의 전통 계승과 학풍 조성을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학생자치기구인 부산경상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1.24., 2021.10.21.>
  - ②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7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없다.
  - ②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3/40

제58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9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년 학생생활 및 진로지도 계획을 지도교수에게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 등을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8.17., 2021.10.21.>
- 제59조의1(학생 집단활동 운영) ① 교내·외 학생집단 활동 시 담당교수·주관학생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여한다.
  - ② 인권침해 사고 발생시 인권침해 행위자 및 연대책임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다.
  - ③ 학생 단체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인권침해 세부기준 및 사고발생시 처벌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01., 조 이동 2021.10.21.>
- 제60조(처벌)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2.08.17.>
  -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 포함)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제 12 장 규율 및 상벌

- 제61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여야 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 제62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3조(장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08.17., 2021.10.21>
  -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
  -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 제64조(성희롱, 성폭력 예방)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4/40

의 규정에 따라 본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설치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2021.10.21.>

## 제 13 장 등록금

- 제65조(납입금) ① 학생은 등록 시에 수업료, 입학금 등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실험실습비, 학생자치회비, 기타 총장이 정하는 비용은 제1항의 수업료 등과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65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6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67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삭제 <2010.12.02.>
  - 2. 삭제 <2010.12.02.>
  - 3. 삭제 <2010.12.02.>
  - 4. 삭제 <2010.12.02.>
  - 5. 삭제 <2010.12.02.>
  - 6. 삭제 <2010.12.02.>
  - 7. 삭제 <2010.12.02.>
- 제67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의 심의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은「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4 장 장학금

- **제68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5/40

2012.08.17.>

## 제 15 장 대학평의원회 및 제위원회

- 제69조(제위원회의 설치) 본교에는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의 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2021.10.21.>
- 제70조(대학평의원회) ① 본교에는 대학평의원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총동문회 관계자,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2021.10.21.>
  - ②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자격 및 정수,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10.21.>
- 제71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2조(기타 위원회) ① 본교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수회, 학생지도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8.17., 2021.10.21.>
  - ② 제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2021.10.21.>

## 제 16 장 직속 및 부속, 부설기관

- 제73조(부속기관) 본교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번호 변경 및 개정2021.10.21.>
  - ① 삭제 <2007.03.01.>
  - ② 삭제 <2021.10.21.>
  - ③ 삭제 <2021.10.21.>
- 제73조의2(부설기관) 본교에는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번호 변경 및 개정2021.10.21.>
  - ① 삭제 <2021.10.21.>
  - ② 삭제 <2021.10.21.>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6/40

- 제73조의3(직속기관) 본교에는 필요에 따라 직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직속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 번호 변경 및 개정2021.10.21.>
  - ① 삭제 <2021.10.21.>
  - ② 삭제 <2021.10.21.>
- 제73조의4(학과 부속기관) 본교의 학과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속기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조번호 변경 및 개정2021.10.21.>
  - ① 삭제 <2021.10.21.>
  - ② 삭제 <2021.10.21.>
- 제73조의5(본부 부속기관) 대학본부에서는 필요에 따라 부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본부 부속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05.09., 2019.11.27., 2020.09.25., 조 번호 변경 및 개정2021.10.21.>
  - ① 삭제 <2021.10.21.>
  - ② 삭제 <2021.10.21.>
- 제73조의6(도서관) ①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서관운영규정」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1.05.09., 조 번호 변경 2021.10.21.>

# 제 17 장 학교기업

- 제74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부산경상대학교에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개정 2011.06.10., 2011.11.16., 2011.11.24., 2012.08.17., 2012.11.01., 2012.12.10., 2016.03.01. 조 번호 변경2021.10.21.>
  - ② 삭제 <2010.07.30.>
  - ③ 본 학교기업은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 **제75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인정학점 등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7.16., 개정 및 조 번호 변경 2021.10.21.>
  - ② 삭제 <2021.10.21.>
  - ③ 삭제 <2021.10.21.>
  - ② 사회맞춤형교육에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7.03.01., 항 번호 변경 2021.10.21.>
- 제76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보상금은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07.16.>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7/40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10%를 넘을 수 없다.
-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 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 번호 변경 2021.10.21.>

## 제18장 자체평가

- 제77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 를 실시한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 번호 변경2021.10.21.>

## 제 19 장 학칙 제·개정 절차

- 제78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조 번호 변경 2021.10.21.>
- 제79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3.01., 조 번호 변경2021.10.21.>>
- 제8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조 번호 변경2021.10.21.>
- 제81조(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조 번호 변경2021.10.21.>
- 제82조(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한다<.개정 2012.11.01., 조 번호 변경 2021.10.21.>

## 제20장 보 칙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8/40

**제83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09.01.>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이 시행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 중 사유로 인하여 1984학년도 말까지 학과의 명칭변경 또는 폐지되는 소속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학과 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은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보며, 폐지되는 학과의 학생은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988학년도까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 및 제24조 제5 항은 198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9/4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5학년도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 자격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자격고사 합격자 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한 이수 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 자격 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0/40

최 고 조신기이		적용학년도		- 비고
학 과	졸업정원	부 터	까 지	비고
세무회계과	240	1986	1988	
법 률 과	80	1986	1988	
방송연예과	80	1986	1989	
무 역 과	120	1986	1991	
산업디자인과	80	_	1986	'84학년도 과 명칭 변경 :
(응용미술과)				응용미술과 → 산업디자인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 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의 2, 제27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 소속변경) 학과가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8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1/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여성교양과, 무용과 재적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패션디자인과, 사회 체육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2/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의 법률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행정과 소속으로 본다.(단, 1988학년도 2학년 졸업유급자는 법률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경상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부산경상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페이지 수	23/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금융과, 일어과, 전자계산과, 사무자동화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금 융정보과, 관광일어과, 컴퓨터정보과, 인터넷정보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영어과, 중국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관광·통상영어과, 중국어통역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4/4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세무회계과, 무역과, 관광·통상영어과, 중국 어통역과,비서과, 행정과, 컴퓨터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 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e-세무정보과, 국제무역과, 관광영어과, 관광중 국어과, 항공비서과, 사회복지행정과, 멀티미디어컴퓨터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국제무역과, 관광영어과, 인터넷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항공해운무역과, 호텔관광영어과, 웹디자인·매니지먼트과 소속으로 본다.
  - ② 종전의 산업디자인과와 방송연예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산업디자인과 재학생은 시각디자인과 또는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중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소속으로 보며, 방송연예과 재학생은 방송영상과 또는 방송엔터테이너·모델과 중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③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5/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시각디자인과, 웹디자인·매니지먼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광고디자인과, 인터넷웹정보시스템과 소속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경영과, 유통서비스과, 호텔경영과, 디지털애니메이션과, 인터넷웹정보시스템과, 의료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기업경영과, 유통관리과, 호텔외식경영과, 애니메이션영화과, 디지털컨텐츠과, 보건의료행정과 소속으로 본다.
  - ②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e-세무정보과, 유통관리과, 관광중국어과, 애니메이션영화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세무정보과, 유통물류과, 호텔관광중국어과, CG영화제작과 소속으로 본다.
  - ②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6/40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경찰·경호행정과, 관광경영과, 호텔·외식경영과, 소방안전관리과, 방송영상과, 멀티미디어컴퓨터과, 디지털콘텐츠과, CG영화제작과, 방송엔터테이너·모델과, 광고디자인과,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플로리스트과, 패션디자인과, 뷰티스타일리스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찰·경호행정과는 경찰경호·부사관계열로, 관광경영과 및호텔·외식경영과는 호텔·관광경영과로, 소방안전관리과는 소방안전계열로, 방송영상과, 멀티미디어컴퓨터과, 디지털콘텐츠과 및 CG영화제작과는 방송영상·디지털계열로, 방송 엔터테이너·모델과는 방송엔터테이너·모델계열로, 광고디자인과, 인테리어·디스플레이과 및 플로리스트과는 디자인계열로, 패션디자인과 및 뷰티스타일리스트과는 패션·뷰티계열 소속으로 본다.
  - ②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경찰·경호부사관계열, 관광중국어과, 사회체육과, 디자인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찰·경호행정계열, 비즈니스중국어과, 스포츠·피트니스계열, 광고·인테리어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 ② 종전의 방송영상·디지털계열의 방송영상전공과정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방송·영화제작계열 소속으로 본다.
  - ③ 종전의 방송영상・디지털계열의 멀티미디어컴퓨터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전공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멀티미디어계열 소속으로 본다.
  - ④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7/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경찰·경호행정계열, 기업경영과, 방송영화·제작계열, 스포츠·피트니스계열, 비즈니스중국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경찰·경호행정과, 경영과, 방송영상·영화과, 스포츠·피트니스과, 중국비즈니스과 소속으로 본다.
  - ②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는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경상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부산경상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8/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5조의2, 제78조 및 제79조는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광고홍보마케팅과, 아동보육복지과, 스포 츠·피트니스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광고·마케팅과, 아동복지보육과, 스포츠·건강관리과 소속으로 본다.
  - ②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5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1항은 2012년 7월 21일 부터 시행하고, 제6조 제3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단, 제69조 제1항은 2012년 7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7조는 2012년 1월 21일부터 소급 시행하고, 제2조 및 제79조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세무정보과, 아동복지보육과, 소방안전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세무회계과, 아동복지보육상담과,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소속으로 본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9/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0/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0조(출석인정) 및 제42조(추가시험)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학점이수), 제46조(졸업) 및 제49조(수료)는 2017년 3월 1일로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부서) 이 학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기획처에서 소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학칙 제31조 제1항 제2호 삭제에 대한 적용은 2018년 10월 01일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1/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변경된 학칙을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사회복지·아동복지보육계열,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IT·콘텐츠계열, 방송연예영상계열, 패션·뷰티계열, 디자인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9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각각 사회복지아동보육과, 소방안전·전기전자과, IT·콘텐츠과, 방송영상연예과, 패션·뷰티과,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 ②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과 <별표1>에 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4.21.)에 의하여『기획실』을『기획처』로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2/40

,『산학처』를『산학취업처』로,『입시홍보실』을『입학홍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 『산학취업처』를 『학생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1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과 <별표1>에 대한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과 <별표1>에 대한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과 <별표1>에 대한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과 제5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1>에 대한 사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3/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4/40

<별지 1>

제○○○○호

# 학 위 증

○ ○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〇〇(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 ○ ○

학위번호 : 부산경상-0000-0000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5/40

<별지 2>

제○○○○호

증 서

○ ○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20 학년도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〇 〇 〇

학위번호 : 부산경상-0000-0000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6/40

<별지 3>

제○○○○호

# 수료증서

○ ○ ○ ○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과 학년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〇 〇 〇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7/40

#### <별표 1>

학과별 학위명칭<개정 2013.05.30., 2015.01.01., 2016.03.17., 2017.09.01. 2018.04.17., 2019.04.09., 2020.04.21., 2021.04.08., 2021.05.21.,2022,04.15.>

경영과 경환경호단경과 경환경호진공 경환경호단정 진문학사 변광일어과 전관장고디자인진공 인테리아,가구디자인전공 인테리아,가구디자인전공 인테리아,가구디자인전공 전문학사 전략 생물보건 전문학사 전략 학자인전공 전략 생명을 사고 영양건공 전문학사 전략 사회복기 아동보육 전문학사 사회복기 아동보육 전문학사 사회복기 아동보육 전문학사 사회복기 아동보육 전문학사 전략		학과(전공)	학위 명칭	비고
관광일본이 청문학사         전공 경본학사           대자인과         신학광고디자인천공         디자인 전분학사           인테리아.가구디자인천공         대자인 전분학사         1           기업문화콘텐츠과         행동교정·특수목의건훈련천공         반려동물보건 천문학사         1           반려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 천문학사         반려동물보건 천문학사         1           반려동물사료영양전공         반려동물사료영양전공         반려동물산업 전문학사         1           바리스타일과         최근데이크업천공         보건 전문학사         1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학사         1           사회복지아동보유과         사회복지 아동보유 진문학사         1           서무회계와         세무회계 전문학사         1           소방행정·안전관리과         소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         1           수프로레저과         유아교육 전문학사         1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전문학사         2           전유터정보·메타비스         소프트웨어전공         1         1           게임에 대비비스콘텐츠건공         생활문화사         2         1           생활문화과         생활문화건공         유유브관광 전문학사         2           소프로워이건공         유무브관광 전문학사         2           성명리료관학사         2         2           소프라이건공         2         2           소프로웨어전공         2         2           사용한국영어전공         2         2	경영과		경영 전문학사	
디자인과         시작광고디자인전공         디자인 전문학사           인테리어:가구디자인전공         기적단생기자인전공           케리터:행디자인전공         1지털콘텐츠 전문학사           반려통물보건과         행동교장·특수목적건훈련정공         반려통물보건 전문학사           반려통물사업과         반려통물사료영양전공           반려통물사료영양전공         반려통물사료영양전공           해어디자인전공         보건 전문학사           보건 전문학사         보건 전문학사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서무회계와         서무회계 전문학사           소반행정·안전관리과         경험문학사           스마트광도시농업과         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           소포츠레지와         취유 전문학사           유아교육         건문학사           소마트웨어건공         수마트용합 전문학사           게임과         소프트웨어진공           게임에타비스콘텐츠진공         경영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생활문화 건문학사           항공·영어건공         육류보관광 건문학사           소마트공유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 건문학사         호텔의료 건문학사			경찰경호탐정 전문학사	
디자인과         인테리어·가무디자인전공         대시한 생디자인전공         기지탈콘텐츠 전문학사         1           반려동물보건과         행동교정·특수목직건훈련정공         반려동물보건 전문학사         1         1           반려동물보건과         행동교정·특수목직건훈련정공         반려동물보건 전문학사         1         1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산업 전문학사         1 <t< td=""><td>관광일어과</td><td></td><td>관광일본어 전문학사</td><td></td></t<>	관광일어과		관광일본어 전문학사	
개립타·앤디자인전공   개립타·앤디자인전공   전문학사   전기턴문화콘텐츠과   전기턴콘텐츠 전문학사   전기턴콘텐츠 전문학사   전기턴콘턴스 전문학사   전기턴콘턴스 전문학사   전기 전문을보건과   한대동물보집 전문학사   한대동물산업과   한대동물마용·토탈패션전공   한대동물사료영양전공   한대동물사료영양전공   한대통물사료영양전공   한대통물사료영양전공   한대통물사료영양전공   한대통물사료영양전공   한대통물사료영양전공   한대학물사료영양전공   한대학물사료영양전공   한대학물사료영양전공   한대학물자   전문학사   전문학자   전문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자   전문학사   전문학자		시각광고디자인전공		
대지털문화콘텐츠과         캠툰애니메이션진공         디지털콘텐츠 전문학사           반려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 전문학사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마용·토탈패션전공         반려동물산업 전문학사           반려동물사료영약전공         반려동물사료영약전공         보건 전문학사           # 타리스타일과         네일아트전공         보건 전문학사           고디메이크업전공         보건 전문학사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학사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 전문학사           소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         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           소프로레저과         취유이교육 전문학사           장우생상영화콘텐츠전공         영상 전문학사           소마트웨어컨전공         그마트용합 전문학사           게임과         소프트웨어전공           게임과 대타비스         소프트웨어전공           게임과 대타비스콘텐츠전공         생활문화 전문학사           생활문화 전문학사         ***           항공·영어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소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디자인과	인테리어·가구디자인전공	 디자인 전문학사	
디지털문화콘텐츠과         디지털커머스마케팅전공         디지털콘텐츠 전문학사           반려동물보건과         행동교정·특수목적건훈련정공         반려동물보건 전문학사           반려동물나요의         반려동물대용·토탈폐선전공         반려동물산업 전문학사           바리도물사료영양전공         해어디자인전공         보건 전문학사           네일아트전공         보건 전문학사           코디메이크업전공         부동산 전문학사           사회복지아동보육과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서무회계과         세무회계 전문학사           소반관모시농업과         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           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         이어 전문학사           수마로와지상의         연상 전문학사           참안미디어콘텐츠과         이상 전문학사           스마트위어건공         스마트용합 전문학사           게임과         11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생활문화 전문학사           항공·영어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유튜브관광전공         유튜브관광 전문학사           소마트물류무역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캐릭터·웹디자인전공		
반려동물보건과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사료영양전공  해어디자인전공  변리등문사료영양전공  해어디자인전공  테일아트전공 코디메이크업전공  부동산과  사회복지아동보육과  서무회계과  소방행정·안전관리과  스마트광도시농업과  전문학사  수마트광도시농업과  전문학사  원산미디어콘텐츠과  청산영화콘텐츠전공  기업·메타버스콘텐츠전공  게임가 보존한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상황군왕영어과  항공·영이전공  항공·영이전공  항공·영이전공  항공·영이전공  항공·영이전공  한경·연절관자  청관리자수  한공·영이전공  항송·영이전공  항송·영이전공  하라트관광전공  한송·영화콘텐츠전공  생활문화과  상황군화관정영어과  항공·영이전공  항공·영이전공  청우·연전공자  청관리자수  상황군화관정영어과  항공·영이전공  하라트관광전공  청양 전문학사  생활문화가  청광·영이전공  기업·메타버스콘텐츠전공  청왕·영이전공  청왕·영이전공  청라관광정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웹툰애니메이션전공		
반려동물산업과 행동교정·특수목적견훈련정공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산업 전문학사 변경동물사료영양전공 헤어디자인전공 네일아트전공 코디메이크업전공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학사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과 -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과 -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포츠레지과 - 취유 교육 전문학사 수마트메이커전공 영상 전문학사 건문학사	디지털문화콘텐츠과	디지털커머스마케팅전공	─ 디지털콘텐츠 전문학사	
반려동물산업과 행동교정·특수목적견훈련정공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산업 전문학사 변경동물사료영양전공 헤어디자인전공 네일아트전공 코디메이크업전공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학사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과 -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과 -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포츠레지과 - 취유 교육 전문학사 수마트메이커전공 영상 전문학사 건문학사	반려동물보건과		반려동물보건 전문학사	
<ul> <li>반려동물사료영양전공</li> <li>해어디자인전공</li> <li>네일아트전공</li> <li>코디메이크업전공</li> <li>부동산 전문학사</li> <li>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li> <li>세무회계과</li> <li>소방행정·안전관리과</li> <li>스마트광도시농업과</li> <li>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li> <li>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li> <li>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li> <li>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li> <li>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li> <li>수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li> <li>스마트광도시농업 전문학사</li> <li>수마교육 전문학사</li> <li>유아교육 전문학사</li> <li>건마트메이커전공</li> <li>전마트위접 전문학사</li> <li>건마트에이커전공</li> <li>건무학사</li> <li>전문학사</li> <li>전문학사</li> <li>전문학사</li> <li>전망교육 전문학사</li> <li>전망교육 전문학사</li> <li>전망교육 전문학사</li> <li>전망교육 전문학사</li> <li>전망교육 전문학사</li> <li>전망교육 전문학사</li> <li>생활문화 전문학사</li> <li>생활문화 전문학사</li> <li>생활문화 전문학사</li> <li>상황·영어전공</li> <li>항공·영어 전문학사</li> <li>수마트물류무역과</li> <li>호텔의료 전문학사</li> <li>호텔의료 전문학사</li> <li>호텔의료 전문학사</li> </ul>		행동교정·특수목적견훈련정공		
# 대한 변환	반려동물산업과	반려동물미용·토탈패션전공	 반려동물산업 전문학사	
부팅스타일과     네일아트전공 코디메이크엄전공     보건 전문학사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학사       사회복지아동보육과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 전문학사       소방행정·안전관리과     공학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수모초례저과     취유 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양송영상·영화콘텐츠전공     영상 전문학사       스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용합 전문학사       전류터정보·메타버스     소프트웨어전공     기입·메타버스콘텐츠전공       게임과     게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     생활문화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생활문화 전문학사       항공관광영어과     학공·영어전공     학공·영어 전문학사       스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반려동물사료영양전공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학사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세무회계 전문학사  세무회계 전문학사  소방행정·안전관리과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포츠레저과  유아교육과  천안미디어콘텐츠과  한송영상·영화콘텐츠전공  건마트용합 전문학사  스마트용 전문학사  스마트용이 전문학사  전라트 이 기전공  전문학사  전문학사  선무학사  선무학사  (이 교육 전문학사  (이 교육 전용학사  (이 교육 전문학사  (이 교육 전		헤어디자인전공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학사       사회복지아동보육과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 전문학사       소방행정·안전관리과     공학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포츠레저과     취유 전문학사       유아교육 전문학사     유아교육 전문학사       청상 전문학사     스마트메이커전공       컴퓨터정보·메타버스 전계의과     소프트웨어전공 게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     1T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생활문화 전문학사       항공관광영어과     항공·영어전공 유튜브관광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스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뷰티스타일과	네일아트전공	보건 전문학사	
사회복지아동보육과		코디메이크업전공		
세무회계과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학사	
소방행정·안전관리과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포츠레저과  취아교육과  취아교육 전문학사  유아교육 전문학사  취하고육 전문학사  경상 전문학사  스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메이커전공  전문학사  스마트용합 전문학사  게임과  게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  생활문화과  장공관광영어과  항공·영어전공  유튜브관광전공  유튜브관광전공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호텔의료 전문학사	사회복지아동보육과		사회복지 아동보육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스포츠레저과       체육 전문학사         유아교육 전문학사       유아교육 전문학사         철단미디어콘텐츠과       방송영상·영화콘텐츠전공       영상 전문학사         스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융합 전문학사         건프트웨어전공       1T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생활문화 전문학사         항공관광영어과       항공·영어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스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세무회계과		세무회계 전문학사	
스포츠레저과       체육 전문학사         유아교육       전문학사         취단미디어콘텐츠과       방송영상·영화콘텐츠전공       영상 전문학사         스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융합 전문학사         컨퓨터정보·메타버스 게임과       소프트웨어전공 게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       IT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생활문화 전문학사         항공·영어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수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소방행정·안전관리과		공학 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전문학사 영상 전문학사 영상 전문학사 스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융합 전문학사 스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융합 전문학사 기임과 기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 생활문화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생활문화 전문학사 항공·영어전공 유튜브관광전공 유튜브관광 전문학사 구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스마트팜도시농업과		스마트팜도시농업 전문학사	
첨단미디어콘텐츠과방송영상·영화콘텐츠전공 스마트메이커전공영상 전문학사컴퓨터정보·메타버스 게임과소프트웨어전공 게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TT 전문학사생활문화과생활문화 전문학사항공관광영어과항공·영어전공 유튜브관광전공항공·영어 전문학사스마트물류무역과경영 전문학사호텔의료관광과호텔의료 전문학사	스포츠레저과		체육 전문학사	
전단미디어콘텐츠과 스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융합 전문학사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전문학사	
전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융합 전문학사		방송영상·영화콘텐츠전공	영상 전문학사	
게임과 게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 IT 전문학사 생활문화 전문학사 생활문화 전문학사 항공·영어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유튜브관광전공 유튜브관광 전문학사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점단미니어콘텐즈과	스마트메이커전공	스마트융합 전문학사	
게임과 게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 생활문화 전문학사 항공·영어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하공관광영어과 항공·영어전공 유튜브관광전공 유튜브관광 전문학사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컴퓨터정보·메타버스	소프트웨어전공	1770	
항공관광영어과     항공·영어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유튜브관광전공     유튜브관광 전문학사       스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게임·메타버스콘텐츠전공	── IT 전문학사	
항공관광영어과     유튜브관광전공       스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생활문화과		생활문화 전문학사	
유튜브관광전공     유튜브관광 전문학사       스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키고기기사시기	항공·영어전공	항공·영어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양궁판광영어과	유튜브관광전공	유튜브관광 전문학사	
	스마트물류무역과		경영 전문학사	
실버케어보건과 보건 전문학사	호텔의료관광과		호텔의료 전문학사	
	실버케어보건과		보건 전문학사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8/40

#### <별표 1-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위명칭<개정 2018.01.31., 2018.10.24.>

학과(계열)명	학위명칭
경영학과	경영학사
부동산경영학과	부동산학사
사회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학사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사
보건의료행정학과	보건행정학사

#### <별표 1-3> 학점은행제에 의한 취득 학위명칭<신설 2018.01.31.>

구분	전공명	학위명
전문학사	사회복지학	행정전문학사
신군역사	미용학	산업예술전문학사
학사	사회복지학	행정학사
44	미용학	미용학사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9/40

<발표 2> <개정 2012.08.17., 2012.11.01., 2012.12.10., 2014.01.09., 2015.07.13., 2016.03.01.. 2019.02.14., 2019.04.09., 2020.03.18., 2021.04.08. 2022.12.20.>

학교기업 명칭	연계학과/계열	사업내용	비고(소재지)
<삭제 2013.02.28.>	<삭제 2013.02.28.>	<삭제 2013.02.28.>	<삭제 2013.02.28.>
앱버튼	컴퓨터정보융합과 디지털문화콘텐츠과 <개정 2012.08.17., 2014.01.09., 2015.06.18., 2016.05.01., 2017.09.01., 2019.04.09., 2020.03.18. 2021.04.08.,2022.12.20.>	·에듀테크 솔루션 개발, VR·AR 교육용 콘텐츠 제작 ·모바일앱 및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모바일 IT 전문인력 양성교육 ·융합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웹표준을 준수한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용 전자책(ebook) 제작 ·기타 본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디자인 제품 개발, 디자인 및 캐릭터,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
<삭제 2012.11.01.>	<삭제 2012.11.01.>	<삭제 2012.11.01.>	<삭제 2012.11.01.>
<삭제 2013.02.28.>	<삭제 2013.02.28.>	<삭제 2013.02.28.>	<삭제 2013.02.28.>
디자인뱅크스	방송영상연기과 뷰티스타일과 디자인계열 <신설 2016.03.01., 개정 2019.04.09., 2021.04.08.>	·영상디자인사업부  - 신기술 연구개발  -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 ·산업디자인사업부  - 기업홍보 브로셔 및 제품안내서 제작  - 기업 케릭터 개발 및 C.I제작  - 기업 제품디자인 개발 및 상품개발  - 환경디자인 제작 ·패션뷰티다자인사업부  - 이미지컨설팅 사업 및 웨딩뷰티 사업운영관리  - 패션 및 뷰티 상품 개발 및 제작 판매  - 패션 뷰티 쇼핑몰 운영 관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 <신설 2016.03.01.>



문서번호	BSKS-3-1-01
제정일자	1980.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40/40

## **<별표 3>**<제정 2021.01.25.>

산학협력단	어 게하기 /게여	사업내용	H] 크( ᄉ 케 기)
학교기업 명칭	연계학과/계열	사합내용 	비고(소재지)
		·스마트팜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용역	
		·스마트팜 관련 디자인 개발	
		·스마트팜 관련 프로그램 및	
BSKS	스마트팜	콘텐츠 개발	부산광역시 연제구
스마트팜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및 제	연산동 411-1번지
		품의 제작 및 공급	
		·스마트팜 관련 교육	
		·스마트팜 관련 경영지원 및	
		컨설팅	